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유엔아이인슈컨설팅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19. 6. 2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개선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 불합리

㈜유엔아이인슈컨설팅 보험대리점은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모집시,

(가) 보험사가 제공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여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'16.1.1.~'18.8.31.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모집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,

(나) 보험사가「보험업감독규정」제4-36조 제11항에 따른 통화품질모니터링업무 등 불완전판매 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통화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'16.1.1.~'18.8.31.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한 계약건의 통화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등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가 불합리하므로

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사로부터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받아 설명하고, 동 계약건의 전체통화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람